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정관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오니, 참석하시는 주주 여러분께서는 참석장,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오전 9시
2. 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712번길 22(삼평동), 글로벌 R&D 센터 대강당
3. 부의 안건

제1호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사외이사 4인 신규 선임의 건
제3호의안 주식분할의 건
제4호의안 정관 개정의 건(개정 전후 대조표 별첨)
제5호의안 주주총회 운영 규정 제정의 건
제6호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제7호의안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개인 주주가 직접 참석하는 경우: 참석장 또는 신분증

법인 주주가 직접 참석하는 경우

- 대표자 참석 시 (i) 참석장, (ii) 대표자 신분증 (iii) 대표자 명함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 참석 시: (i)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은 사실이 기재된 문서(원본) (ii) 사용인 신분증 (iii) 참석장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명함/사원증

대리인에 위임하는 경우: (i) 위임장 원본(주주의 인감 날인) (ii) 참석장, 주주 인감증명서, 주주 신분증 사본 중 택일, (iii) 대리인 신분증

2021년 3월 16일

주식회사 크래프톤
대표이사 김창한 (직인생략)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 홈페이지(www.krafton.com) 공지, 주주총회 당일 총회장소에서의 안내 및 장소 이동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통해 주주총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주주총회일 당일의 기상상황, 교통상황 등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 일시 이후에 도착하시는 분들에 대하여는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별첨] 정관 개정 전후 대조표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 개발업 2. 소프트웨어 배포업 3. 부동산 임대업 4. 위 항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 개발업 2. 소프트웨어 배포업 3. 부동산 임대업 4. 기타 스포츠(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5. 위 항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회사 경영 목적 추가
제3조 (본점의 소재지) 1.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내에 둔다.	제3조 (본점의 소재지) 1.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본점 소재지 변경
제4조 (광고방법)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rafton.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상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4조 (광고방법)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rafton.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오자 수정 (전상장애 → 전산장애)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100,000,000)주로 한다.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삼억(300,000,000)주로 한다.	발행 주식 총수 상향
제6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100원으로 한다.	주식 분할에 따른 1주의 금액 축소
제8조 (주권의 종류) 3.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	<삭제>	주권의 종류 규정 삭제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제8조의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1.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 이내로 하되, 그 중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우선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의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1.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의 발행 한도는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우선주식의 발행 한도를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수정
6. 전환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보통주식의 액면가액 이상으로 이사회가 정하는 가액,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전환우선주식 발행 후 3월이 경과한 날로서 이사회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전환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보통주식의 액면가액 이상으로 이사회가 정하는 가액,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전환우선주식 발행 후 3월이 경과한 날로서 이사회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규정 수정 (제9조의4 → 제9조의5)
8.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위 제2항 내지 제8항에서 정한 여러가지 내용을 혼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8.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위 제2항 내지 제7항에서 정한 여러가지 내용을 혼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오자 수정 (제8항 → 제7항)
<신설>	제8조의 3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주식 등의 전자등록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
제9조 (신주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제9조 (신주인수권) 1. 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신주인수권 규정 정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호의 방식에 의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신주발행한도는 각 신주 발행 시점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 때 발행주식총수는 발행할 신주와 기존에 발행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근거하여 이미 발행되어 유효하게 존속하는 주식은 차회 발행한도 계산 시 해당 호의 한도에서 차감하는 누적적 방식에 의해 계산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2.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	신주인수권 규정 정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340조의2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해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기술의 도입 또는 영업상의 전략적인 제휴를 위해 그 유치회사 또는 제휴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회사가 기술의 도입 또는 경영상의 필요로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에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	
<신설>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 규정 정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4.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에 결의한다.	신주인수권 규정 정비
<신설>	5.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결의한다.	신주인수권 규정 정비
<신설>	6.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에 결의한다.	신주인수권 규정 정비
<신설>	7.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해야 한다.	신주인수권 규정 정비
제9조의2 (일반공모증자 등)	<삭제>	신주인수권 규정 정비
제9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1.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위의 범위 내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에서 정하는 임직원 외의 자에게 주	제9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1.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주식매수선택권 규정 정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 및 주식의 수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에 따른 범위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임직원과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력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개선, 영업신장, 기술혁신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3의 임직원 외의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상법 제542조 8의 제2항 제5호, 제6호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회사 또는 제2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임직원과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력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개선, 영업신장, 기술혁신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 제6호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회사 또는 제2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	주식매수선택권 규정 정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삭제>	주식매수선택권 규정 정비
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식매수선택권 규정 정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6조의7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전 3개월 간의 평균종가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주식매수선택권 규정 정비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2.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원 이하일 것 (부여 시 시가 - 행사가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	<삭제>	주식매수선택권 규정 정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상 주식 수		
6.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해당 부여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해당 부여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 규정 정비
7.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6.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달리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서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 규정 정비
9.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8.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식매수선택권 규정 정비
제9조의4 (신주의 배당기산일)	<삭제>	상법 개정에 따른 신주 배당기산일 규정 삭제
<신설>	제9조의5 (동등배당)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동등배당 규정 신설
제10조 (명의개서대리인) 3.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제10조 (명의개서대리인) 3.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주식 등의 전자등록을 위한 명의개서대리인 업무 범위 수정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기타 주식에 관한 업무절차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주식 업무취급규칙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 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문구 수정
제11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삭제>	주식 등의 전자등록을 위한 규정 정비
제12조 (주주명부의 폐쇄)	제12조 (기준일)	조문 제목 수정
1.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삭제>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주주명부 폐쇄 규정 삭제
2.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1.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조항 숫자 변경
3.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2.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유연성을 위한 기준일 규정 수정 및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주주명부 폐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이)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규정 삭제
<신설>	제13조 (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사채발행 규정 신설
제13조 (전환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긴급한 자금의 조달, 국내외 기업인수합병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우리사주조합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13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항에서 정한 사채발행한도는 본 항에 근거하여 이미 발행되어 유효하게 존속하는 사채의 액면총액은 차회 발행한도 계산 시 한도에서 차감하는 누적적 방식에 의해 계산한다(이하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에 대해서도 동일함).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	전환사채 발행 규정 정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사채의 발행일 후 90일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서 전환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사채의 발행일 후 90일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서 전환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환사채 발행 규정 정비를 위한 단서 규정 삭제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규정 수정
제14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4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3자 발행 한도 상향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서 신주인수권의 발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모집이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년이 경과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서 신주인수권의 발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규정 정비를 위한 단서 삭제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5.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규정 수정
제15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5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익참가부사채의 제3자 발행 한도 상향
4.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하여는 제47조의 배당은 하지 않는다.	4.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하여는 제47조의2에 의한 중간배당은 하지 않는다.	문구 규정 명확화
제16조 (교환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6조 (교환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교환사채의 발행한도 상향
제17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7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0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정관 개정에 따른 제11조 준용규정 삭제
<신설>	제17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아니한다.	사채 등 전자등록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
제18조 (소집시기) 2.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연도 말일의 다음날로부터	제18조 (소집시기) 2.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	정기주주총회 개최 유연성을 위한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3(삼)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기준일 규정 수정 반영
제19조 (소집권자) 2.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소집권자) 2.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3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개정에 따른 준용규정 수정
제20조 (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의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회의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0조 (소집통지 및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회의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전자문서로 소집통지 시 주주의 동의 요건 삭제
<신설>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주식회사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방법 신설
제29조 (이사와 감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 및 기타 비상무이사를 둘 수 있다.	제29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감사 규정 삭제 및 사외이사 규정 추가
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1.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	제30조 (이사의 선임) 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규정 정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2.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규정 정비
<신설>	제30조의2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2.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신설
제31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31조 (이사의 임기)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규정 정비
2.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삭제>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규정 정비
제32조 (임원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 되었을 때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가 되고 또한 업무집행상 지장이 없을 때는 보결 선임을 보류 또는 다음 정기 주주총회 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보결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32조 (이사의 보선) 이사가 결원되었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가 되고 또한 업무집행상 지장이 없을 때는 보결 선임을 보류 또는 다음 정기주주총회 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보결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규정 정비
제33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제33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문구 정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2.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2.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부사장 등 임원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문구 정비
제34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회일의 1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4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회일의 1주 전에 각 이사에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규정 정비
제35조 (이사회 결의방법) 2.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제35조 (이사회 결의방법) 2.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법령 또는 정관상 규정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충족될 수 있음을 반영
제36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36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규정 정비
제36조2 (위원회) 1. 회사는 필요 시 이사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인사위원회 (2)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6조2 (위원회) 1. 회사는 필요 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평가 및 보상위원회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이사회 내 위원회 종류 수정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2조와 제33조를 준용한다.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정관개정에 따른 준용 규정 수정
제38조 (이사의 직무)	제38조 (대표이사의 직무대행)	조문 제목 수정
1.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통할하고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 이사 및 이사는 대표 이사를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한다.	<삭제>	
2.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 이사, 이사의 순으로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2.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를 정한다.	직무대행 결정 방법 수정
제39조 (이사의 의무)	제39조 (이사의 의무)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규정 정비
4.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감사의 직무)	제40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감사위원회 설치
1.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술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4.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	1.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2.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3.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사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5.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6.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함)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7.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8.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9. 기타 감사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 관련 법률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신설>	제40조의2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감사위원회 설치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1.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2.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술한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5.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6.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7.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8.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9.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1조 (감사의 감사록)	제41조 (감사위원회의 감사록)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규정 정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1.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규정 정비
2.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그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2.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규정 정비
제42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42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규정 정비
1.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한도를 정한다.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한도를 정한다.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규정 정비
2.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급여규정에 의한다.	2.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급여규정에 의한다.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규정 정비
제44조 (영업년도)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4조 (영업연도)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목 수정
제45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1.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총회 회일 6(육)주간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제45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1.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총회 회일 6(육)주간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상법 제447조 및 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규정 정비 및 기타 서류 명확화
<신설>	2. 회사가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연결 재무제표 추가
2.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4(사)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	3.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른 규정 정비
3.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의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번호 수정
<신설>	제45조의2 (외부감사인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 신설
제46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영업연도 말의 총수입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제46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영업연도 말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문구 수정
제47조 (이익 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이익 배당의 방법 확대
2.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2.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말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문구 수정
4.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4.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주의 배당기산일 수정 반영
<신설>	제47조의2(중간배당) 1.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	중간배당 규정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3.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 (시행일) 본 정관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은 2021년 7월 12일부터, 제6조는 2021년 5월 4일부터 각각 효력이 발생하고, 제40조 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8항, 제45조 제3항을 포함한 관련 법령 상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전자등록이 완료된 때로부터 시행한다. 제9조, 제13조의2, 제14조 내지 제16조에서 정한 신주 또는 사채발행의 한도 계산 시 본 정관 개정 이전에 발행된 신주 또는 사채는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본 정관 개정 이후 발행되는 신주 또는 사채만을 기준으로 새롭게 위 한도를 계산한다.	시행시기 추가